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8. 12. 18.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 ('98.12.1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98.7.16. 대통령령 제15836호)과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대상 등 일부규정을 국유재산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대부료의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사업용 재산의 일시불 매각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계약으로 변경·연체 이자를 감면하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조 삭제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승인 범위
    -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토지의 경우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대상을 신설(안 제18조의 2, 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감면방안 신설  
(안 제22조의 3, 제38조의 2)
-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안 제24조 제5호)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방안 신설  
(안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2항, 부칙 제2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정한 대상등으로 함  
(안 제2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98년 8월 2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동조례안에서 삭제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을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현행 제19조의 규정도 동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는등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동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신설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 제18조의 2와 안 제18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및 매각대상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3과 안 제38조의 2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대상과 방안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에게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대금 또는 잔액의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 주므로써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재산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1998. 11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98.7.16, 대통령령 제15836호)과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 등 일부규정을 국유재산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대부료의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사업용 재산의 일시불 매각시 경제적 사정을 고려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계약으로 변경·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조 삭제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승인 범위
    -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토지의 경우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대상을 신설(안 제18조의2, 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 감면방안 신설(안 제22조의3, 제38조의2)
-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안 제24조제5호)
-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한 대부료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방안 신설(안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제4항, 제27조제2항, 부칙제2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제44조의2에 정한 대상등으로 함(안 제21조)

### 3.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98. 7.16, 대통령령 제15836호)
-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기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영 제107”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7조”로 한다.

제6조제3항중제1호중 “가격의 사정”을 “의 적정여부”로, 동조제3항제2호중 “사정”을 “적정여부”로, 동조제3항제3호중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구유재산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
-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할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2호중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로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단,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예규제594호)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22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제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제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제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제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

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3의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구유 재산

제23조제1항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가격평정조서에는 관련전문기관”을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구유림등 특별회계 소관재산”을 “특별회계 소관재산”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2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재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팔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의·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49조중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을 “부구청장,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관사 : 부구청장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등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중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중요재산) ①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 부지와 그 부속물을 양여받거나 그 양여조건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li> <li>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li> </ol> <p>②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p> <p>③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li> <li>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li> <li>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li> <li>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제3조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p> <p>6. 기타 사회 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5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생략)</p> <p>1. 보상금액은 <u>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u>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상당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생략)</p> <p>1. <u>열 제107조에</u>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⑤ (생략)</p>	<p>제5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부동산시가표준액</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u>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열”이라 한다)제107조</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재산의 취득·처분·교환 <u>가격의</u> <u>사정</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①~②(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u>의 적정</u> <u>여부</u></p>

현행	개정안
<p>2. 대부료·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전 3.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4.~6. (생략) ④~⑩ (생략)</p>	<p>2. .... 적정여부 3. 기부채납..... ..... ..... 4.~6. (현행과 같음) ④~⑩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구청장은 <u>구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u></p>	<p>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u>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u></p>
<p>&lt;신설&gt;</p>	<p>제18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u>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u></p>
<p>&lt;신설&gt;</p>	<p>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구유재산</p>



현행	개정안
	<p>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u></p> <p>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u></p> <p>5. <u>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u></p> <p>6. <u>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u></p>
<p>제19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 <u>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영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u></p>	<p>제19조 &lt;삭 제&gt;</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략)</p> <p>1.~3. (생략)</p> <p>&lt;신설&gt;</p>	<p>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u></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1. (생략)</p> <p>2.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p> <p>3.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1.~5. (생략)</p> <p>〈신설〉</p>	<p>는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할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p> <p>3. (현행과 같음)</p> <p>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p> <p>③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p>

현행	개정안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① (생략)</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⑤(생략)</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토지시가표준액..... .....</p> <p>③~⑤(현행과 같음)</p> <p>⑥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단,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예규제594호)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p>

현 행	개 정 안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매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현 행	개 정 안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50퍼센트를 잠면하는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현행	개정안
<p>제23조(토석채취료 등)①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외에 토석채취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p> <p>②~③ (생략)</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관련 전문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자. 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p> <p>제23조(토석채취료 등)①.....제2호.....</p> <p>.....</p> <p>.....</p> <p>.....</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p> <p>.....</p> <p>.....</p> <p>⑤(현행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생략)</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와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 사용자가 전용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2~4(생략) 〈신설〉</p>	<p>2~4(현행과 같음) 5.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p>제25조(대부료의 납기)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li> <li>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li> <li>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li> </ol>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다.</p> <p>③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p> <p>②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양여받거나 양여받은 폐천부지등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②&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구유림등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p>	<p>③ &lt;삭 제&gt;</p> <p>④..... ..... ..... 특별회계 소관재산..... ..... ..... .....</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 영 제95조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의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li> <li>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li> <li>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i> </ol>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2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li> <li>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li> <li>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li> <li>4.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li> </ol>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 내의 재산</li> <li>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 시설내의 재산</li> <li>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ol>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li> <li>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li> <li>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li>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li> </ol>

현행	개정안
	<p>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li> <li>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li>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li> <li>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li> </ol>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p>	<p>제49조(정의).....합          .....부구청장, 시설관리사등.....          .....          .....          .....</p>
<p>제50조(관사의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구청장</li> <li>2. 2급관사 : 부구청장</li> <li>3. 3급관사 : 1호 내지 2호 이외의 관사</li> </ol>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구청장 관사</li> <li>2. 2급관사 : 부구청장 관사</li> <li>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등</li> </ol>

현행	개정안
<p>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 날까지 당해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 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li> <li>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li> </ol>
<p>제60조(준용) 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60조(준용) 국유재산.....</p> <p>.....</p> <p>.....</p> <p>.....</p>